

보도자료

2018. 4. 10.



대 법 원
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

인사총괄심의관실

담당자

인사제1심의관 성원제
인사제2심의관 안금선
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
공보관실 ☎ 3480-1451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-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
- 구체적으로는, **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**으로써,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
- 대법원은 **2018. 4. 10.부터 4. 30.까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**하여 2018. 5. 중순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예정임
-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책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,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

1.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의미

(1)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

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
(2)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

-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의무를 선언한 것임
- 대법관은 사회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지녀야 하고, 더불어 사법부의 최종심 재판관으로서 뛰어난 법률가적 역량도 지녀야 하는바, 대법원장이 이러한 자격을 가진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점에 대해 헌법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임

(3) 대법원장의 의무

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법관을 제청해야 하고,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함

2.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련

(1)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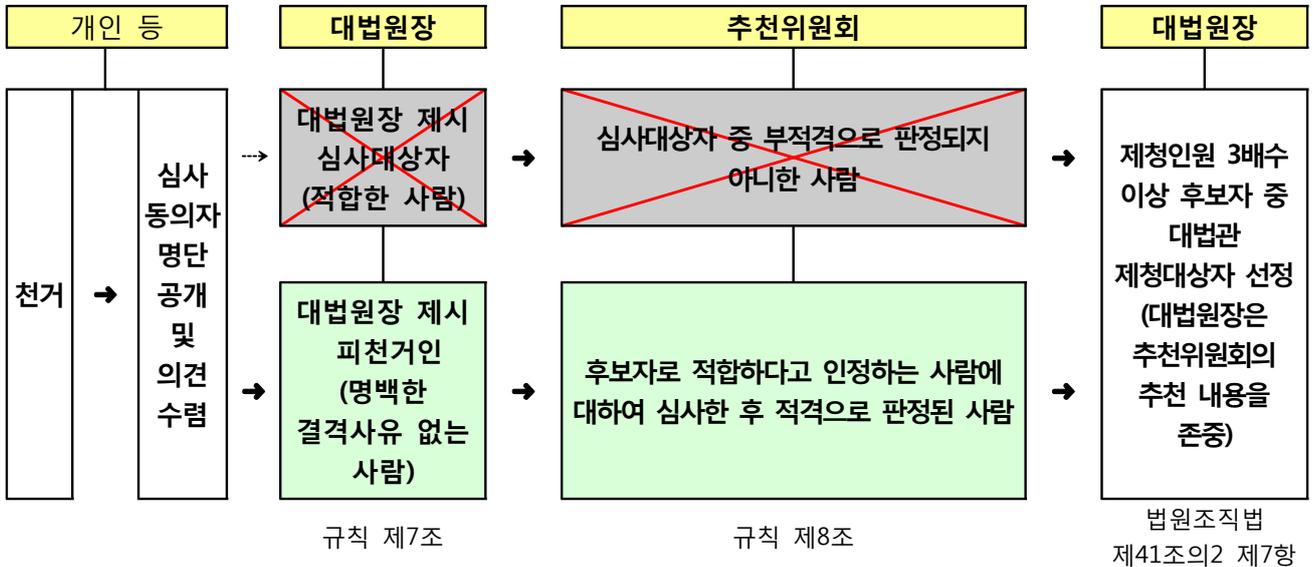
-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,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-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, 규정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, 현행 제청절차를 점검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음

(2)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절차 개요

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그 중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

- 피천거인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여 심사방법을 일원화함

○ ※ 개정규칙안에 따른 심사 및 추천절차 개요



(4) 입법예고

○ 대법원은 2018. 4. 10.부터 4. 30.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
-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의 '대국민서비스 - 공고 - 입법예고'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○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2018. 5. 중순경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, 2018. 8. 2. 각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, 김신,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임

- 위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약 20일로 정함

3. 앞으로의 전망

○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칙 개정 외에도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영한, 김신, 김창석 대법관의 각 후임 대

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임

-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,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

4. 참고사항(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제정)

-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함
 - 다만,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외에 법령상 지명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

제6조(재판관의 임명)

-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.
-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·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(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)을 임명하기 전에,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.

-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, ‘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’를 제정할 예정임